

line의 직업성폭로를 위하여 TLV를 5ppm으로 권고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독성자료나 산업위생에 대한 경험에 의해 유용한 정량적 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STEL을 제외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자들은 8시간 TWA 한계내에 있더라도 Introduction to chemical substance의 Excursion Limit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ferences

1. Smyth, H. F., Jr., C. P. carpenter, C.S. Weil and U.S. Pozzani : Arch. Ind. Hyg. Occup. Med. 10 : 61 (1954).
2. Smyth, H. F., Jr. : Personal communication to TLV Committee member(November 24, 1964).
3. Dernehl, C. U., ; J. Occup.Med. 8 ; 59(1966)
4. Mellerio, J. and R. A. Weale : Brit J. Ind. Med. 23 : 153 (1966)
5. Mastromatteo, E. : J. Occup. Med. 7 : 502 (1965).
6. Woewicki A : Private communication to TLV Committee member (1968).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프라스틱(주) 압출공이 야간작업도중 배가 아파 진단한바, “만성심부전증”이 발생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88-353호, 88. 12. 19. 기각)

원 처 분 청 :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재 결 서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재 심 청 구 인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성명 : 신○○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성명 : 박○○
소속 : ○○프라스틱공업(주)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피재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프라스틱공업(주)소속 근로자로서 1985. 10. 31. 야간 작업도중 06:00경 배가 아파서 안양소재 한국병원에서 진단한바 신장에 물이 차 있다고 하여 다시 고대부속 혜화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상병명 “만성 심부전증”이 진단되어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9조의 3에 의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외 재해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상병명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11. 2. 신○○)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11. 3.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0. 19. 홍○○)
4. 사망진단서(1988. 7. 21. 고대의대부속 혜화병원장)
5. 자문의 소견서 사본(원처분청 자문의 및 노동부 본부 자문의)
6. 소견서 사본(1988. 7. 1. 안산성모의원장)
7. 진정사건 조사복명서 사본(1988. 7. 15. 행정서기 최○○)
8. 상병상태에 대한 조회회신 사본(1988. 7. 1. 고대의대 부속 혜화병원장)
9. 문답서 사본(김○○, 김○○, 박○○)
10.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본(1988. 2. 16. 근로복지공사 반월병원장)

11. 소음시험 성적서 사본 및 대기오염시험 성적서 사본(1986. 10. 25, 1984. 3. 30. 경기도 보건연구소장)

12.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프라스틱공업(주) 소속 압출공으로서 1983. 9. 26.부터 1985. 6. 30까지 안산 ○○수지공업(주)에서 근무후 1985. 7. 1~10. 31.까지 동사에 근무하여 오던중 10. 31. 야간 작업중인 06:00경 배가 아파서 안양소재 한국병원에서 진료한바 신장에 물이 차 있다고 하여 다시 고대부속 혜화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상병명 “만성 심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 반응으로 유지 인공 신장을 하고 요양도중 1988. 7. 20.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만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피재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상병명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재자가 건강한 상태로 입사하여 밤새가며 기계를 보며 눈뜬새 없이 비닐포장을 하여 무거운 작업과 비닐냄새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야간작업 압출기에 화학제품 E.V. E 색소 등 여러물질의 냄새가 좋지않아 13년동안 근무후 신장이 다 망가지고 재해를 당했으므로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수지공업(주)와 ○○프라스틱(주)의 소음 및 조도, 대기오염 측정은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서 유해한 작업장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재자에 대한 1988. 7. 8.자 안산성모의원 발행 소견서를 보면 “상병명: 분태성 환자로 당시 혈압은 210/150으로서 수년전부터 계속되어온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합병증이나, 고혈압과 신질환이 상존하였던 경우로 판단되었음”이고 1988. 7. 12. 고대의대 부속 혜화병원의 상병상태에 대한 조회 회신 내용의 주치의 의학적 소견은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만성사구체 신염으로 추측되고, 만성 심부전증으로 인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거부 반응으로 인해 현재 유지인공 신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고혈압, 복수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위중한 상태로 계속적인 관찰 및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며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본 환자에 대한 발병에 대하여 초진소견서, 주치의 소견서 및 본인인근무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그리고 조서 문답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본 결과, 사업장 공정과정에서는 유해한 사업환경은 없으며, 원래 본태성 고혈압증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평시 고통을 받아 왔던 것으로 사료됨. 본 환자의 평시 작업은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의학적으로

로 볼 때 만성 심부전증은 당뇨병, 고혈압 및 편도선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의 병발 속발증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인바, 이상의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본 환자는 직업 유인성 질환보다는 일반 질병인 것으로 사료된다"임이고 노동부 본부 자문의 소견도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만성 심부전은 작업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서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경우 상병명 "만성심부전증"은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피재자의 상병을 업무와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주)○○금속 근로자가 연장근무등 과로하여 감기, 몸살을 앓아 상병명 "뇌막염"이 발생한 경우

(88-43호, 88. 2. 22. 기각)

재 결 서

재 심 청 구 인

주소: 경기도 안양시 호계3동 주공아파트
성명: 이 ○
소속: (주)○○금속

원처분을 받은 자

주소: 상 동
성명: "
소속: "

원 처 분 청 :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이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7. 12. 11.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적용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주)○○금속 소속 근로자로서 1987. 10. 12. 이전인 1987. 10. 6~1987. 10. 8.(3일간) 계속 72시간을 근무중 의식을 잃고 병원 진료 결과 업무 과다로 인한 과로로 감기, 몸살을 앓아 이로 인하여 뇌막염이 발생하였다며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1987. 10. 6~10. 8(3일간)까지 72시간 계속 근무하고, 1987. 10. 9~10. 10(2일간)은 평상시와 같이 각 3시간씩의 연장근무까지 하였고, 1987. 10. 11은 휴일로 휴무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나 자문의 소견상 뇌막염은 외상에 의하거나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뇌막염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심사청구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1987.

10. 12. 이전인 1987. 10. 6~10. 8(3일간)까지 계속 72시간 근무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감기몸살을 앓았으며, 이로 인하여 뇌막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질병인 뇌막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및 청구이유(1988. 2. 5.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2. 11.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홍○○)
4. 요양결정결의서 사본(자문의 소견 포함, 1987. 12. 11. 안양지방 노동사무소장)
5. 요양신청서 사본(1987. 11. 24. 이○)
6. 초진소견서 사본(1987. 11. 12. 고대부속 구로병원)
7. 진술서사본(1987. 12. 8. ○○금속근로자 장○○)
8. 재해경위 진술서(1987. 12. 9. ○○금속 대표이사)
9. 노동부 자문의 소견(1988. 1. 19. 김○)
10.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금속 소속 근로자로서 1987. 10. 6부터 10. 8까지 3일간 계속 72시간을 근무하였고 1987. 10. 9~10. 10(2일간)은 평상시와 같이 각 3시간씩의 연장근무까지 하였고 1987. 10. 11은 휴일로 휴무하였는 등으로 보아 다소 과로는 인정하나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뇌막염은 외상에 의하거나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87. 10. 12이전인 1987. 10. 6~10. 8까지 (3일간) 계속해서 72시간 근무와 매일 연장근로 3시간씩하여 과로에 의한 감기몸살을 앓아 이로 인하여 뇌막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 : 청구인은 (주)○○금속의 근로자로서 1987. 10. 12이전인 1987. 10. 6~10. 8까지(3일간) 계속해서 72시간을 근무하였고 동년 10. 9~10. 10(2일간)은 1일 3시간씩 연장근로하고 동년 10. 11은 휴무 동년 10. 12 근무중 의식을 잃고 집에서 1일간 쉬고 동년 10. 14. 회사에 출근 근무중 다시 의식을 잃고 안양 한국병원에 입원 가료(5일간)하고 그후 고려대학부속 구로병원으로 전원 가료중인 자이다.

둘째 : 고려대학부속 구로병원의 초진소견서상 상병명 “뇌막염”이고

세째 :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상 “본 환자는 감기 몸살로 약을 복용하였고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은 바 뇌막염으로 진단되었음. 뇌막염은 외상성이 아닐 때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 질병에 속하므로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다.

네째 : 노동부 자문의 소견은 “감기로 인한 세균감염(바이러스 감염 포함)으로 뇌막염 증상이 발생될 수 있음”의 소견임.

이상 이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일반적인 상태에서 감기로 인한 세균감염(바이러스 감염 포함)으로 뇌막염 증상이 발병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업무의 과로에 의한 감기 몸살로 인하여 뇌막염이 발병되었다고 하나 의학적으로 외상성에 의하거나 또는 세균감염(바이러스 감염 포함)으로 인하여 뇌막염이 발병되었다고 하는 확인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청구인의 상병은 업무외적 사유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며 취소할 이유가 없다.